

대한소방공제회 「특별위로금」 안내

□ 대한소방공제회 특별위로금은?

- (발생배경) 2001년 서울, 부산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언론사 등이 주관하여 모금한 금액 중 일부와 시도 출연금을 기반으로 조성한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현장 순직·공상자에게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
- (지원금액) 사고당해 소방위 5호봉 월봉금액 기준 (순직-18개월 분 / 공상-3개월 분)

□ 특별위로금 지급 대상

- ◆ **누 가?** 소방공무원(회비 불입여부 무관)
- ◆ **무엇을?**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 훈련 중
- ◆ **결 과?** 사망 또는 ^{*}상이(질병 불포함)를 입은 경우

※ ^{*} 입원일수 요건 충족 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입원일수 요건	국가유공자 등록(상이등급 판정)
계속해서 9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동일 상병명으로 3개월 이내 추가 입원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수에 산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표 1. 상이의 요건>

- (청구권 소멸시효) 지급사유 발생일(사고일 또는 최초의 상이등급 판정일)로부터 2년 이내

※ 재직 중 입은 상이에 대해 퇴직 후 표1의 상이등급 판정(최초 판정에 한함)을 받은 경우 포함

□ 특별위로금 신청 구비서류

- ① 특별위로금 신청서
- ② 소속기관장(소방청장, 시·도지사)이 발행하는 (순직·공상)사실 확인서

순직자 특별위로금	공상자 특별위로금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 청구자 관계)	-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유족보상금결정통보서(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공무원연금공단)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국가보훈처)	- 입원사실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본인 통장사본

<표2. ①,②외 급여별 추가 구비서류>